

제713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□ 안 건 명 :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(19공구) 화곡역 교통 CCTV
이설공사 설계용역

□ 심 사 일 : 2013. 7. 17.

□ 사업개요

- 용역비 : 4,052천원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30일
- 과업규모 : 화곡역(교통정보용 CCTV:1대)의 설계

□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 사 항 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귀공사에서 질의한 자체 설계여부 관련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합리적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- 서울시 회신내용(기술심사담당관-9968호, '13.6.10) · 관련규정의 예외규정에 의거 귀공사 자체설계 가능 - 경찰청 회신내용(교통관리과-18221호, '13.06.24) · 원인자 설치지침에 의거 전문설계업체에서 시행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 전문설계업체 용역발주시 - 요청 용역비(4,052천원) 범위 내에서 2012년 실시한 설계용역을 감안하여 용역비 적용
3. 기타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 전문설계업체 용역발주시 - 과업내용과 범위에 맞게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 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관기관(부서)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

<첨 부>

기술용역 추진시 사전 확인사항

확 인 항 목	세 부 내 용
용역시스템	1.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 (첨부)등록 ○ <u>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용역관리 시스템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니 결과 통보</u>
입찰전	2.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- 심의절차 이행 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○ 발주부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전 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- 단,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사항이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 협의 로 건설기술심의 대체
심사 및 심의전 확인	3. 유관부서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○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(유관)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-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부서, 공사부서,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-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(13.5.22) :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작성
타당성 조사용역	4. 타당성조사 용역시 과업내용서 반영사항 ○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범위 검토 -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시 재원조달방안 및 타당성 재검증 검토 시행
용역준공시	5.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철저 -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- 정보소통광장 등록 철저이행 ○ 발주부서 는 '13.7.1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 성과품에 대해 정보소통광장(http://www.gov20.seoul.go.kr)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- 용역보고서 : PDF파일 변환하여 정보소통광장에 등록(준공시) - 전체성과품 : 인쇄본 3부 및 CD 1부 서울도서관 제출(준공시) · 서울도서관 디지털성과품 표준포맷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※ 시장방침 제135호(13.5.24) :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
설계시	6.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 추진시 - 지장물 확인철저 -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최소화 ○ 공사구간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 는 우리시 통합 공간정보서비스 (http://98.33.0.64/gis/index)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- 아울러 지반조사,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
내진	7.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설계 반영여부 ○ 모든 공공건축물(규모관계 없이) 및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수문, 교량·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※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철저(구조기술사)